##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18

발의연월일: 2021. 11. 3.

발 의 자: 박홍근・홍성국・정일영

송옥주 · 김정호 · 임오경

서영석 • 고용진 • 김수흥

김영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 분기'와 '매 반기'에 각각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되었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2021. 9. 2.)되는 것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104조의5 신

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 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 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소득세법」제164 조의3제1항에 따라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 세서등"이라 한다)을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 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지급 명세서등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명세서 제출자 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규모사업 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까지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2 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4조의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
	<u>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u>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4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
	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
	세서와 「소득세법」제164조의
	3제1항에 따라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을 지
	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
	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
	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없는 것으로 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 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 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소규모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 명세서등의 제출기한까지 지급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지급명 세서등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 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명세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 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 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 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 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 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 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 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 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 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 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 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

제줄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
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
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
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
는 5백만원)으로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u>제99</u> 조의12, 제10
<u>4조의5</u>

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 의3, <u>제</u>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b>.</b>
②
<u>제99조의12, 제104조의5</u>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 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 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 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 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 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 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 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